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신원인수인에게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참석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엔젤재가노인복지센터

제4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엔젤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 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센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다. 센터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